

2016.07.15

## '한 · 콜롬비아 FTA 7월 15일 발효' 안내

한 · 콜롬비아 FTA가 지난 2013년 2월 양국의 정식서명 이후 3년 5개월 만인 2016년 7월 15일(금)부터 발효되었습니다.

콜롬비아는 중남미 국가 인구 3위, GDP 4위 국가로서 한 · 콜롬비아 FTA는 콜롬비아가 아시아 최초로 한국과 체결한 FTA이기 때문에 중남미 진출 교두보 확보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한 · 콜롬비아 FTA로 인해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품목인 승용차**(관세율 35%)는 10년 이내, **자동차부품**(관세율 5~15%)과 **승용차용 타이어**(관세율 15%)는 5년 내 관세가 철폐됩니다.

또한 콜롬비아의 가계소득 증가에 따라 **미용, 의료, 웰빙 등의 현지 관심이 높아지면서 수출 유망 품목인 화장/미용용품**(관세율 15%)은 7~10년, **의료기기**(관세율 5%)와 알로에/홍삼 등 **비알코올 음료**(관세율 15%)는 즉시 관세가 없어집니다.

2016.07.15

## 주요내용

### 1. 양허 현황

#### 교역중인 모든 품목에 대해 협정발효 후 10년 이내에 관세 철폐

※ 품목수 기준 (우리) 96.1%, (콜측) 96.7%

※ 수입액 기준 (우리) 99.9%, (콜측) 97.8%

#### [승용차/자동차 부품]

##### 10년 내 모든 관세 철폐

※ 특히, 향후 콜롬비아 시장 성장이 전망되는 중형 디젤 승용차(1,500-2,500cc, SUV)에 대해 9년 철폐 확보(콜-미 10년 / 콜-EU 7년)

#### [섬유]

##### 수출 주력품목(전체 섬유 수출액의 93%)으로 5년 내 관세 철폐

#### [농산물]

##### 양허 제외, 관세율할당, 농산물세이프가드, 계절관세, 장기 관세 철폐기간 설정 등 다양한 예외적 수단 확보

2016.07.15

## 2. 협정관세 적용

### □ 협정 발효 적용시점

- **협정발효일 (16년 07월 15일) 오전 0시 수입신고분부터 적용**
- 원산지 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 당시에 특혜관세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특혜관세 사후신청 가능
- 수입 후 1년 이내 또는 수입국 법령에 따라 규정된 그 이상의 기간 이내 신청 가능

## 3. 원산지증명 방식

### □ 발급방식

- **자율발급**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작성하고 서명)

### □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

- **서명일로부터 1년간 유효**

### □ 소액물품 원산지증명서 면제

- 수입물품 과세가격이 **미화 1,000 달러 이하**인 경우

### □ 협정발효일 이전에 작성한 원산지증명서

- 수입신고서가 협정발효일 또는 그 후에 작성된 경우,  
**협정발효일 전 6개월 이내**에 작성·서명된 C/O는 인정

**\*한·콜롬비아 FTA 원산지증명서를 첨부하였으니 참고 바랍니다.**

# □ 원산지증명서 서식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16.7.1.>

## 콜롬비아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앞쪽)

<b>CERTIFICATE OF ORIGIN</b> <b>KOREA-COLOMBIA FREE TRADE AGREEMENT</b>						
1. Exporter's Name and Address:  Telephone:                      FAX:  E-Mail:		2. Blanket Period:  YYYY    MM   DD      YYYY    MM   DD  From: ____/____/____/ To: ____/____/____/				
3. Producer' s Name and Address:  Telephone (optional):  E-Mail (optional):		4. Importer' s Name and Address:  Telephone:                      FAX:  E-Mail:				
5. Description of Good(s)		6. HS Tariff Classification #	7. Origin Criterion	8. Producer	9. Value Test	10. Country of Origin
11. Remarks:		I certify that:  - The information in this document is true and accurate and I assume the responsibility for proving such representations. I understand that I am liable for any false statements or material omissions made on or in connection with this document.  - I agree to maintain, and present upon request, documentation necessary to support this Certificate, and to inform, in writing, all persons to whom the Certificate was given of any changes that would affect the accuracy or validity of this Certificate.  - The goods originate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Parties and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for those goods in the Korea-Colombia Free Trade Agreement.  This Certificate consist of ____ pages, including all attachments.				
12. Authorized signature:		Company:				
Name:		Title:				
Date:                      YYYY    MM   DD ____/____/____		Telephone:		Fax: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작성방법

※ 이 서식은 수출자에 의해 명료하고 충분히 작성되어야 하며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때에 수입자가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이 서식은 수출자에게 사용될 목적으로 생산자에 의해 자발적으로 작성될 수도 있습니다. 이 서식은 영문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타자로 치거나 인쇄되어야 합니다. 작성을 위한 추가 공간이 필요한 경우 별지를 사용하십시오.

1. 제1란에는 수출자의 성명, 주소(도시 및 국가를 포함한다),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주소, 그리고 사업자등록번호 등의 식별번호(선택기재)를 적습니다.
2. 제2란은 이 증명서가 제5란의 물품과 동일한 물품의 복수 선적에 적용될 경우 12개월을 넘지 않는 포괄증명기간을 적습니다. "FROM"은 증명서가 포괄증명물품에 적용 가능하게 되는 날이며(이 증명서의 서명일보다 앞설 수도 있습니다), "TO"는 포괄증명기간이 종료되는 날입니다. 이 증명서를 근거로 협정관세 적용의 신청이 이루어지는 물품의 수입은 두 날짜 사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3. 제3란에는 생산자의 성명, 주소(도시 및 국가를 포함한다),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그리고 사업자등록번호 등의 식별번호(선택기재)를 적습니다. 둘 이상의 생산자가 증명서에 포함될 경우에는 "VARIOUS"로 적고, 제5란의 증명물품과 관련된 모든 생산자의 성명, 주소(도시 및 국가를 포함한다),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그리고 사업자등록번호 등의 식별번호(선택기재)가 적힌 생산자 목록을 첨부합니다. 수출자가 생산자에 대한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AVAILABLE TO CUSTOMS UPON REQUEST"로 적습니다.
4. 제4란에는 제1란에 정의된 수입자의 성명, 주소(도시 및 국가를 포함한다),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주소를 적습니다.
5. 제5란에는 각 물품에 대한 상세한 품명을 적습니다. 품명은 승품장 및 HS(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상의 품명과 연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세부내역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 증명서가 물품의 단일 선적에 적용될 경우에는 각 물품의 수량, 측정단위 및 고유의 참조번호(승품장번호, 배송주문번호, 구매주문번호 또는 물품을 식별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번호 등)를 적습니다.
6. 제6란에는 제5란의 각 물품에 대한 HS 품목번호를 6단위까지 적습니다.
7. 제7란에는 제5란의 각 물품에 적용되는 원산지결정기준을 아래의 표에 따라 적습니다. 원산지결정기준은 콜롬비아와의 협정(이하 "협정") 제3장(원산지규정) 및 부속서3-가(품목별 원산지기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재 문구	원산지결정기준
A	협정 제3.1조가호에 따라 계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원전생산된 경우
B	협정 제3.1조나호에 따라 계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전적으로 생산되고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C	협정 제3.1조다호에 따라 계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전적으로 원산지재료로만 생산된 경우
D	협정 제3.16조(영역원칙)의 적용을 받는 경우

8. 제8란에는 제5란의 각 물품에 대해 본인이 생산자일 경우 'YES' 를 적습니다. 본인이 생산자가 아닐 경우 'NO' 를 적고, 이 증명서의 작성 근거를 아래의 표에 따라 적습니다.

기재 문구	증명서 작성 근거
(1)	물품이 원산지물품으로의 자격을 갖추었다는 본인의 인지
(2)	물품이 원산지물품으로의 자격을 갖추었다는 생산자의 서면 진술(원산지증명서는 제외한다)에 대한 본인의 신뢰
(3)	생산자가 수출자에게 자발적으로 제공한, 그 물품을 위해 작성되고 서명된 원산지증명서

9. 제9란에는 제5란의 각 물품에 대한 원산지결정기준으로 역내부가가치비율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 역내부가가치가 공제법에 의해 계산되었다면 'BD' , 집적법에 의해 계산되었다면 'BU' 를 적습니다.(협정 제3.3조 참조)
10. 제10란에는 원산지 국가명을 적습니다. 콜롬비아로 수출되는 원산지물품에 대해서는 'KR' ,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원산지물품에 대해서는 'CO' 를 적습니다.
11. 제11란에는 제5란의 물품에 대해 품목분류나 원산지에 대한 사전심사를 받은 경우 등 이 증명서와 관련된 다른 참고사항이 있는 경우에 그 발급기관, 사업자등록번호 등의 식별번호 및 발급일자를 적습니다.
12. 제12란은 수출자가 작성, 서명하고 날짜를 적어야 합니다. 수출자에게 사용될 목적으로 생산자가 증명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생산자가 작성, 서명하고 날짜를 적어야 합니다. 날짜는 이 증명서가 작성되고 서명된 날이어야 합니다.